

2023년도 제2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0. 16.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임형주,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4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92건(안건번호 제2023-193040호~19563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93040호~193059호(순번 1번~20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193060호~193076호(순번 21번~37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193077호~193082호(순번 38번~43번)는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93083호(순번 44번)는 블로그에 음악 저작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개인 감상, 촬영 영상 및 사진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35조의5의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으로 의결함.

그 외 안건번호 제2023-193084호~195631호(순번 45번~2592번) 불법 복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207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III.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4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건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257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0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총 4,278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

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2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이 게시된 사안 총 34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 등"으로 볼 수 있는 점, 제공되는 불법복제물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경우에는 게시자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20번,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20번에 대해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1번 내지 3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PDF 파일이 중고거래 사이트 '♥♥♥♥♥'와 '♠♠♠♠♠'에서 문자, 이메일 또는 채팅 등의 방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안 총 28건임. PDF 파일은 문자, 이메일 또는 채팅 등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을 매개로 하여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불법복제물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달행위가 이메일이나 채팅 등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저작물을 여러 명에게 반복하여 전달할 경우 이를 저작권법이 정의하는 '공중에의 전송'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라고 판단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원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1번 내지 37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1번 내지 37번에 대해 가결함.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8번 내지 43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만화 불법복제물 총 6건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만화는 모두 국내 합법 시장에서 유료로 유통중인 저작물들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38번 내지 43번,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8번 내지 43번에 대해 가결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게시자가 자신의 생각,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 블로그에 스트리밍 형식으로 음악 저작물을 제공한 사안 총 1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일상을 담은 사진과 글을 게재하면서 ‘◆◆◆◆’이라는 곡의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형태로 게시하고 있음. 음악 저작물 전체 분량을 이용하고 있는 점, 따라서 해당 음악 저작물을 합법 시장에서 유료로 이용할 유인이 감소한다는 점 및 게시물에 다수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고, 해당 블로그 운영 목적의 상당 부분이 상업적 목적인 점을 고려하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판례의 태도 및 앞서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해 검토한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려움.

즉,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목적으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44번, 블로그에 게시된 음악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해당 사안이 만약 광고가 없고 일부 사람만 본다고 하면 저

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 B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에 해당함.
- 김선화 선임: 글 내용이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해당 게시글은 블로그에 게시된 것으로 검색하면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이 가능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됨.
- C 위원: 블로그 성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 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적인 글을 썼다고 하나, 본인 블로그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 B 위원: 음원 사용에 있어서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나 본인의 사진과 일기 형태의 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함께 게재돼 있어 게시물 전체를 삭제하거나 전송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OSP에 시정권고서가 나갈 때 어느 것이 불법복제물이니 그것에 대해 경고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는지?
- D 위원: 시정권고서 양식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필요 시 내용을 기재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A 위원: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경고의 시정권고를 했을 때 게시자로부터 시정권고 내용에 대해 문의해온 경우가 있는지?

- 김선화 선임: 경고 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OSP이기 때문에 OSP에 문의를 할 것으로 생각됨. 본인이 창작한 짧은 에세이와 함께 게시된 음원이 전송중단되어 OSP에 문의를 했는데 OSP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보호원으로 문의하라고 안내하여 문의가 온 경우는 있었음.
- C 위원: 상업적 용도로 곡 전체를 사용한 정황이 있어 부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전송중단하기에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콘텐츠도 있기 때문에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경고의 시정권고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함.
- 참석 위원 전원: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4번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5번 내지 259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4,207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더 년 2'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3번은 영화 '더 년 2'로, 2023. 9. 27. 극장 개봉하여 현재 상영중인 영화의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임.

(영화 '차박- 살인과 낭만의 밤'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38번은 영화 '차박- 살인과 낭만의 밤'임. 2023. 9. 13. 극장개봉하여 현재 OTT에서 유료로 서비스중인 영화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드라마 '도적: 칼의 소리'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99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드라마 '도적: 칼의 소리'임. 2023. 9. 22. 넷플릭스 독점 공개 드라마의 9부작 전체 분량을 판매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45번부터 2592번까지 총 4,207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함)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SW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5번 내지 2592번 중 이미 삭

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93040호~193082호(순번 1번~43번) 및 제 2023-193084호~195631호(순번 45번~2592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93083호(순번 44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2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0. 23.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임형주

위원 홍승기